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br>번호 | 756 |
|----------|-----|

2015년 11월 10일  
운 영 위 원 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5. 9. 18. 서윤기의원 외 47명
- 나. 회부일자 : 2015. 9. 23
- 다. 상정일자 : 제264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15년 11월 10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서윤기 의원)

### 가. 제안이유

- 최근 정부는 경제 도약을 위한 국정운영 대국민 담화(2015.8.6)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2015.9.15)을 통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청년일자리 펀드 조성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안」 등을 제정하여 청년들의 취업난, 주거불안, 학자금 부족 등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나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도 뚜렷한 성과가 없어 이에 대한 평가 및 점검이 필요함.

- 또한 청년 일자리, 복지, 청년 일반 정책 등이 서울시 각 실국과 시의회 소관 위원회에 산재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청년문제에 대한 현황조사와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청년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청년발전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함.

## 나. 주요내용

- 1)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2) 위원 수는 20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3)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나.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 박 노 수)

### □ 검토요지

#### 1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취지와 배경

##### 가. 구성 결의안의 취지

- 서울시는 청년들의 취업난, 주거불안, 학자금 부채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과 등을 통해 청년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바, 서울시 청년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점검과 함께 청년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청년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음.<sup>1)</sup>

##### 나. 특위 구성안의 배경

- 청년(15세~29세)은 일차적인 정규교육 과정을 마치고 사회에 최초로 진입하는 이행기로서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경험과 역량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음.
- 청년기의 활동은 전 생애 설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갈 예비 주역으로서 앞으로 한국 사회의 미래를 보장할 인적 자원이라고 할 것임.
-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청년층은 높은 실업률과 일자리의 절대적 부족, 주거 불안, 신용 악화 등 총체적인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음.

1)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등에 근거하여 특별위원회가 구성됨.

- 특히 빈곤층에 속한 상당수의 청년들은 정부의 각종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등 청년세대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빈곤율을 보면, 전체 빈곤율 8.9%와 비교할 때 청년층 빈곤율은 평균 16%이고, 통계청이 산출한 전체 실업률 4.1% 대비 청년 실업률은 10.2%에 달하고 있음.
  - 서울시의 주거 빈곤율 통계자료에서도 전국 가구 주거빈곤율<sup>2)</sup>은 하향 추세인 반면에, 서울청년 1인가구 주거빈곤율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이 분석한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6개월 이상 연체자) 현황<sup>3)</sup>에서도 청년 신용유의자의 증가세가 실현하고 있음.
- 이처럼 빈곤의 대물림, 교육비용 상승과 부채 발생, 청년 취업난과 노동의 질 악화, 주거비용 상승과 주거환경 악화 등 연쇄적인 악순환의 시스템에서 놓인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교육, 주거, 신용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음.

## 2 특별위원회 구성 필요성

- 청년 인적 자원을 사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없다면 한국 미래는 장기적으로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세대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져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 문제는 시급한 사회 현안이라고 하겠음.
- 이에 서울시는 청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청년 기본조례」,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등을 근거로 아래 표와 같이 주요 정책을 추진·집행하고 있음.

2) 전국 가구 주거빈곤율: 29.2%(2000년) → 19.3%(2005년) → 14.8%(2010년)

서울 청년 1인 가구: 빈곤율 31.2%(2000년) → 34%(2005년) → 36.3%(2010년)

3)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6개월 이상 연체자) 현황에서도 3,785명(2007년) → 2만2,142명(2009년) → 3만 1,363명(2011년) → 4만 1,691명(2013년) → 4만 635명(2014년)

[표] 청년 정책 지원 부서

|                  | 주거  | 신용   | 교육  |
|------------------|---|--|---|
| 주요 대상<br>(정책 초점) | 1·2인 주거 빈곤<br>청년 가구<br>(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 청년층 신용유이자<br>(부채 악성화 경로 차단)                              | 저소득 가구 학생<br>(교육 격차 해소)                   |
| 사업 내용            | 주거 빈곤 1·2인 청년<br>가구를 대상으로 한<br>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br>주거 환경 개선 | 신용 회복 및 긴급 생활<br>안정 지원, 건강한 금융<br>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br>협력 강화 | 저소득 청년 장학생,<br>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br>등 교육 격차 해소 |
| 소관 부서            | 주택정책과<br>임대주택과  | 청년정책담당관  | 교육정책담당관                                   |
| 소관 상임위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교육위원회                                     |

- 그러나 위와 같은 청년 정책이 서울시 각 실국에 산재되어 있는 바, 특별위원회 제안이유와 같이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음.
- 청년문제가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과 관련되고, 이에 대한 청년 정책이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서울시의회 차원의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대안 발굴 필요성 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sup>4)</sup>

### 3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회 결과

- 동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에 따른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조회 결과, 특별한 회신내용 없음.

4)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13명, 전원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윤기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756 |
|----------|-----|

발의연월일: 2015년 9월 18일

발 의 자: 서윤기, 이신혜, 박양숙, 유광상,  
김중욱, 박호근, 이정훈, 문형주,  
박마루, 유 청, 권미경, 맹진영,  
오승록, 김동욱, 박준희, 우형찬,  
김문수, 장인홍, 장우윤, 문종철,  
신언근, 박진형, 이순자, 전철수,  
김용석(도봉), 조규영, 김동욱,  
김인호, 박운기, 이승로, 김정태,  
유 용, 김광수(도봉), 오봉수,  
양준욱, 김인제, 서영진, 김영한,  
조상호, 최영수, 문영민, 이윤희,  
김선갑, 신원철, 김혜련, 오경환,  
김진철, 장홍순 의원(48명)

## 1. 주 문

-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나. 위원 수는 20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 2. 제안이유

- 최근 정부는 경제 도약을 위한 국정운영 대국민 담화(2015.8.6)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2015.9.15)을 통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며 특히,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청년일자리 펀드 조성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안」 등을 제정하여 청년들의 취업난, 주거불안, 학자금 부채 등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나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도 뚜렷한 성과가 없어 이에 대한 평가 및 점검이 필요함.
- 또한 청년 일자리, 복지, 청년 일반 정책 등이 서울시 각 실국과 시의회 소관 위원회에 산재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청년문제에 대한 현황조사와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청년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청년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함.



###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나.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음.

##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청년이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취업난, 주거불안, 학자금 부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위기에 처해 있다.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등을 제정하여 청년의 고용 확대, 주거 안정, 부채 경감, 생활 안정, 문화 활성화 등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조례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도 뚜렷한 성과가 없어 이에 대한 평가 및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 또한 정부는 경제 도약을 위한 국정운영 대국민 담화(2015.8.6)와 노동 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2015.9.15)을 통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며 특히,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청년일자리 펀드 조성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 서울의 경우 10% 넘는 청년실업률, 40%에 이르는 청년 1인가구의 주거 빈곤율, 신용악화의 원인인 학자금 부담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이에 청년문제에 대한 현황조사와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청년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한다.

2015. 9.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